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관리규칙

제정 2013.04.22.

1차 개정 2019.01.25.

2차 개정 2019.11.12.

소관부서 : 산학협력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신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반도체배치설계권·퍼블리시티권·캐릭터권·데이터베이스권·종자보호권 등의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칙에서 정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인 발명자를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본 대학은 직무발명의 경우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교직원 이외의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②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본 대학이 제4조의 규칙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권리의 소속

제6조(발명의 신고) ①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3.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4. 양도증

②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장은 의견을 첨부한 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발명자는 직무발명일 경우 반드시 제1항의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총장은 제4조의 규칙에 의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발명에 대하여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본 대학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산학협력단장은 제8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양도받으면 지체 없이 대학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국제특허의 경우 지식재산권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출원한다.

제10조(제경비의 부담) ①본 대학은 제8조에 의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용 중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 및 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출원등의 제한)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제7조의 규칙에 따라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이 취득한 특허권을 본 대학이 승계할 경우 제6조 내지 제7조, 제8조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특허권의 유지) 본 규칙에 의하여 대학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4조(위원회) 창신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또는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2>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발명의 국제출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1.12.>

제1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1.12>

②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제 4 장 기술 실시 계약

제20조(사전협의) 본 대학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Know-how등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1조(계약체결) 산학협력단에서는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Royalty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기술료) Royalty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기술료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 예정자와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특례) 실시자가 자금 영세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사전에 특허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본 대학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 대학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 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③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본 대학의 허락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懈怠)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업체와 Royalty 계약시, 본 대학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창신대학교의 귀책 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6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상기 1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7조(기술료의 사용) ①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 총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②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8조(사용절차) ①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를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②기술이전 보전비는 관련비용 공제 후 기술료의 20%로 하며, 그 사용 용도는 외부 기업·전문가 등에 위탁 의뢰한 경우의 위탁수수료 및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교직원의 기술이전 인센티브로 사용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기술료 중 대학지분은 매년 회계연도말에 결산 후 기술이전기금으로 적립한다.

제 6 장 보상금

제29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거나 지식재산권의 실시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허관련 비용과 기술이전관련 비용 등의 관련경비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10%를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보상금 및 실시보상금을 발명자(외부발명자 포함)에게 지급한다.

1. 발명자 : 70%
2. 산학협력단 : 30%

② 연구수행에 따른 노하우(know how)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자 : 80%
2. 산학협력단 : 20%

③ 제1항의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제2항의 노하우 중 특정자문 보상금 지급비율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본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

한다.

제33조(보상금의 불반환) 연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 실시를 위하여 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5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및 특허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타의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2.>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발 명 신 고 서						
발 명 의 명 칭	국문 : 영문 :					
발 명 자	성명	한글:	(인)	주민등록번호		
		영문:		발명자 지분(%)		
	주소					
	소속			전화번호		
	성명	한글:	(인)	주민등록번호		
		영문:		발명자 지분(%)		
	주소					
	소속			전화번호		
	성명	한글:	(인)	주민등록번호		
		영문:		발명자 지분(%)		
	주소					
	소속			전화번호		
관 련 연구과제	과제고유번호		ex)000-000-000			
	부처명		ex) 지식경제부			
	연구사업명		ex)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		ex)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		ex) 창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ex)2007.1.1~2007.12.31			
출 원 희 망 국	☐ 국내(KR) ☐ PCT ☐ 미국(US) ☐ 일본(JP) ☐ 유럽(UPO) ☐ 기타					
발 명 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 특허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면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해야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특허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허 출원전 발명 공개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발표내용 사본					
관련기업	국내	이 기술이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알기 힘들면 공란으로)		특허사무소지정	사무소명	특별히 원하시는 곳이 없다면 산단 전담변리사 사무소 선정
	국외				TEL	
상기의 발명을 창신대학교 지식재산권규칙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 대표자 (인)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권 리 승 계 합 의 서				
발명의 명 칭	한글: 영문:			
양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타 :			
	양수인	성명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양도인은 위 발명신고서와 함께 발명 신고 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창신대학교 지식재산권규칙에 따라 창신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칙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발명정보요약서

발명명칭	국문 : 영문 :			
발명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기술개발 상태	☐ 특허신청 및 구상단계 ☐ 모델개발완료 ☐ 시제품개발단계 ☐ 상품화가능 ☐ 기타()			
발명의 개요				
적용·응용 분야				
기술의 특징				
발명의 효과				
기술분야	☐ 기계설비 ☐ 금속·소재 ☐ 정밀·화학 ☐ 전기·전자 ☐ 에너지 ☐ 정보통신 ☐ 환경 ☐ 자원 ☐ 해양 ☐ 기초원천 ☐ 기타()			
기술의평가 (약식평가)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선행기술조사서(국내·외)		
1. 산업재산권(관련 기술분야 기존특허 등)조사 -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 위스(www2.wips.co.kr), - 한국과학기술정보원(www.kisti.re.kr) - 기타 DB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저자명/ 페이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별지 제6호 서식]

기 술 이 전 계 약 서

(통상/전용실시권)

기술명 및 특허번호

- 0000

계약기간 : 0000.00.00~ 0000.00.00(00년간)

0000.00.00

계약당사자

"갑"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기관명 :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단 장 : 000 (인)

"을"

주 소 : 00000

업체명 : (주) 000

대표이사 : 000 (인)

"기술이전책임자"

창신대학교 00학과

책임자 : 교수/연구원 0 0 0 (인)

발명 설명서

1.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1 기술분야

2.2 배경기술

2.3 발명의 내용

2.3.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목적)

2.3.2 과제 해결 수단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

2.3.3 효과

2.4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3. 특허 청구범위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

4. 도면의 간단한 설명

5. 도면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 이라한다}과 주식회사 0000{이하 “(을)” 이라한다}간에 기술이전 및 로열티 지급에 관한 합의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개시일 및 유효기간) ①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제7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각호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00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00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기술이전 계약내용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이 계약에 적용되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가 서면으로 통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기술이전) ①(갑)은 발명기술 “0000 “의 기술을 (을)에게 기술이전하고자 한다.

②기술이전에 따른 선급기술료는 일금 00만원(₩00,000,000)으로 하고 다음의 시기와 방법으로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단위 : 원)

기술료	지급일	지급조건
선급기술료	0000년 00월 00일 이내	현금
경상기술료	매년 00월 00일 이내	매출액의 0%, 0년 단위

③기술이전료 지급통장은 다음으로 한다.

1) 은 행: 경남은행

2) 계 좌: 000-00-00000000

3) 예금주: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④(갑)은 (을)에게 경상이익의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반 비용) 본 기술의 향후 특허권 소요비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소요되는 비용(여비 등 기술이전·지도에 따른 활동비)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비밀보장) (을)은 기술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을)의 임직원이나 피고용자 또는 승계인을 통하

여 비밀에 관한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은 단독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 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지급 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 1) (을)이 제3조에 따른 실시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 2) (을)의 영업상 불법행위 또는 제품의 품질하자 등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창신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을)이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동의 사항을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
- 4) 현금흐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5) 당사자간의 재계약 협의가 실패한 경우
- 6) 기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제8조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일반 민사 소송법 상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갑)과 (을)간 기술이전 및 로열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갑)과 (을)간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사항은 우선되지 않는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서 언급된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10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기술에 대한 보증) ①(갑)은 이전기술에 관하여 현재 상태 그대로 (을)에게 제공하며,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성공적 상업화, 기술 활용 또는 상품화와 관련하여

현재 (갑)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본 기술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②(갑)은 (을)이 본 기술과 관련한 상품화 및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유하기로 한다.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